광주 수완지구 중흥S-클래스 입주자 모집공고

- 1·2순위 : 06년 9월 4일(월)
- 3순위 : 06년 9월 5일(화) ~ 7일(목)

■ 광주 수완지구 중흥S-클래스11-2블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광산구 건축팀 제176호(2006. 8. 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수완택지개발지구 11-2블록
■ 공급규모 : 지상 1층 ~ 지상 25층 아파트 11개동 968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주택형별	세대수	층수	공급면적 전용	공급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소계	공용면적 기타공용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공용면적 소계	계약면적	주택형별 대지지분
민영주택	116.1763	150	25층	84.9264	31.2499	116.1763	3.4804	34.9268	38.4072	154.5835	60.1775
	119.2660	58	15층	84.6347	34.6313	119.2660	3.4684	34.8068	38.2752	157.5412	59.9708
	120.7866	616	17~24층	84.6347	36.1519	120.7866	3.4684	34.8068	38.2752	159.0618	59.9708
	122.4846	144	25층	84.4012	38.0834	122.4846	3.4589	34.7108	38.1697	160.6543	59.8054

■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주택형별	층별	세대수	공급가격	계약금 5% (계약시)	계약금 10% (06.12.17)	중도금 1회 (07.05.12)	2회 (07.10.07)	3회 (08.03.05)	4회 (08.08.01)	5회 (09.01.25)	잔금 (입주시)	비고
116.1763	1층	6	176,400	8,820	17,640	17,640	17,640	17,640	17,640	17,640	61,740	35 평형
	2층	6	181,400	9,070	18,140	18,140	18,140	18,140	18,140	18,140	63,490	
	3~4층	12	183,400	9,170	18,340	18,340	18,340	18,340	18,340	18,340	64,190	
	기준층	120	191,300	9,580	19,130	19,130	19,130	19,130	19,130	19,130	66,960	
	최상층	6	213,400	10,670	21,340	21,340	21,340	21,340	21,340	21,340	74,690	
119.2660	1층	3	179,400	8,970	17,940	17,940	17,940	17,940	17,940	17,940	62,790	36A 평형
	2층	3	184,400	9,220	18,440	18,440	18,440	18,440	18,440	18,440	64,540	
	3~4층	8	186,400	9,320	18,640	18,640	18,640	18,640	18,640	18,640	65,240	
	기준층	40	194,300	9,710	19,430	19,430	19,430	19,430	19,430	19,430	68,010	
	최상층	4	216,400	10,820	21,640	21,640	21,640	21,640	21,640	21,640	75,740	
120.7866	1층	22	179,400	8,970	17,940	17,940	17,940	17,940	17,940	17,940	62,790	36B 평형
	2층	28	184,400	9,220	18,440	18,440	18,440	18,440	18,440	18,440	64,540	
	3~4층	56	186,400	9,320	18,640	18,640	18,640	18,640	18,640	18,640	65,240	
	기준층	482	194,300	9,710	19,430	19,430	19,430	19,430	19,430	19,430	68,010	
	최상층	28	216,400	10,820	21,640	21,640	21,640	21,640	21,640	21,640	75,740	
122.4846	1층	3	183,400	9,170	18,340	18,340	18,340	18,340	18,340	18,340	64,190	37 평형
	2층	3	188,400	9,420	18,840	18,840	18,840	18,840	18,840	18,840	65,940	
	3~4층	12	190,400	9,520	19,040	19,040	19,040	19,040	19,040	19,040	66,640	
	기준층	120	198,300	9,910	19,830	19,830	19,830	19,830	19,830	19,830	69,410	
	최상층	6	220,400	11,020	22,040	22,040	22,040	22,040	22,040	22,040	77,140	

■ 광주 수완지구 중흥S-클래스10-2블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광산구 건축팀 제185호(2006. 8. 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수완택지개발지구 10-2블록
■ 공급규모 : 지상 1층 ~ 지상 20층 아파트 4개동 241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주택형별	세대수	층수	공급면적 전용	공급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소계	공용면적 기타공용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공용면적 소계	계약면적	주택형별 대지지분
민영주택	116.3105	40	20층	84.9264	31.3841	116.3105	4.9428	38.0702	43.0130	159.3235	58.6184
	120.2690	163	14~15층	84.9884	35.3006	120.2890	4.9453	38.0890	43.0343	163.3033	58.6474
	122.6180	36	20층	84.4012	38.2168	122.6180	4.9123	37.8348	42.7471	165.3651	58.2559

■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주택형별	층별	세대수	공급가격	계약금 5% (계약시)	계약금 10% (06.12.17)	중도금 1회 (07.04.12)	2회 (07.08.07)	3회 (07.12.02)	4회 (08.03.27)	5회 (08.07.22)	잔금 (입주시)	비고
116.3105	1층	2	176,700	8,780	17,570	17,570	17,570	17,570	17,570	17,570	61,500	35 평형
	2층	2	180,700	9,030	18,070	18,070	18,070	18,070	18,070	18,070	63,250	
	3~4층	4	182,700	9,130	18,270	18,270	18,270	18,270	18,270	18,270	63,950	
	기준층	30	190,700	9,530	19,070	19,070	19,070	19,070	19,070	19,070	66,750	
	최상층	2	212,700	10,630	21,270	21,270	21,270	21,270	21,270	21,270	74,450	
120.2690	1층	8	178,700	8,930	17,870	17,870	17,870	17,870	17,870	17,870	62,550	36C 평형
	2층	9	183,700	9,180	18,370	18,370	18,370	18,370	18,370	18,370	64,300	
	3~4층	24	186,700	9,280	18,570	18,570	18,570	18,570	18,570	18,570	65,000	
	기준층	110	193,700	9,680	19,370	19,370	19,370	19,370	19,370	19,370	67,800	
	최상층	12	215,700	10,780	21,570	21,570	21,570	21,570	21,570	21,570	75,500	
122.6180	1층	-	-	-	-	-	-	-	-	-	-	37 평형
	2층	2	187,700	9,380	18,770	18,770	18,770	18,770	18,770	18,770	65,700	
	3~4층	4	189,700	9,480	18,970	18,970	18,970	18,970	18,970	18,970	66,400	
	기준층	30	197,700	9,880	19,770	19,770	19,770	19,770	19,770	19,770	69,200	
	최상층	2	219,700	10,980	21,970	21,970	21,970	21,970	21,970	21,970	76,900	

■ 광주 수완지구 중흥S-클래스 9-2블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광산구 건축팀 제184호(2006. 8. 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수완택지개발지구 9-2블록
■ 공급규모 : 지상 1층 ~ 지상 15층 아파트 4개동 209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주택형별	세대수	층수	공급면적 전용	공급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소계	공용면적 기타공용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공용면적 소계	계약면적	주택형별 대지지분
민영주택	120.4881	209	15층	84.9684	35.5197	120.4881	6.2621	39.5819	45.8440	166.3321	58.9777

■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주택형별	층별	세대수	공급가격	계약금 5% (계약시)	계약금 10% (06.12.17)	중도금 1회 (07.04.12)	2회 (07.08.07)	3회 (07.12.02)	4회 (08.03.27)	5회 (08.07.22)	잔금 (입주시)	비고
120.4881	1층	7	180,300	9,010	18,030	18,030	18,030	18,030	18,030	18,030	63,110	36C 평형
	2층	10	185,300	9,260	18,530	18,530	18,530	18,530	18,530	18,530	64,860	
	3~4층	32	187,300	9,360	18,730	18,730	18,730	18,730	18,730	18,730	65,560	
	기준층	144	195,400	9,770	19,540	19,540	19,540	19,540	19,540	19,540	68,390	
	최상층	16	217,300	10,860	21,730	21,730	21,730	21,730	21,730	21,730	76,060	

■ 공통사항
1)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평형별, 동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2)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3)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4)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층, 관리실, 경로당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5)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6) 층수는 전체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7)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8)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9)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 공급가격의 60%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함.
10)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는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다 (이때,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11)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수납하여야 함. (단, 주택의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수납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2006. 8. 30(수)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공통

구분	신청자격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무주택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분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인 분을 포함)에게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함.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순위	면적구분	청약관련예금
민영주택	광주광역시	무주택 우선공급	85㎡이하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75%를 우선 공급함 - 만40세 이상 및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40% 최우선 공급) - 만35세 이상 및 0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35% 우선 공급) - 전용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 1순위가 되신 분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 된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분
	광주광역시	1순위	전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0.08.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0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세대에 속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청약가능)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 참조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02.09.05 이후 청약통장 가입 1순위 신청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
	광주광역시	2순위	전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광주광역시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 청약신청기간 및 장소

구분	거주구분	순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광주광역시	무주택(40%)우선	06. 9. 4(월)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시간 : 09:30~16:3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일시 : 06.9. 8(금) - 시간 : 14:00
		무주택(35%)우선 및 1순위			
		2순위			
		3순위	06. 9. 5(화)~9. 7(목)		

※ 견본주택에서 청약 접수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인터넷, ARS 청약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당첨자 명단은 상기 접수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 경과기간 및 요건
1.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2. 평형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상호간 변경이 가능하며, 이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3. 평형을 변경한 자의 주택공급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평형 신청가능 (단, 평형변경이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평형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4. 94.08.15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 접수 방법
1. 무주택 우선공급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미달시에만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인 민영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2. 1,2,3순위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공급방법별로 청약순위를 구분하여 청약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3.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4.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과 해지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 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제반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배우자포함)	공통	① 주택공급신청서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는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②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 (1, 2순위 신청자에 한함) ③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자격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배우자 관계확인이 곤란한 배우자 대리신청시 호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호적등본 1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 1부(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⑤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⑥ 예금인장 (1, 2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⑦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호적등본) 제출] ⑧ 청약신청금 : 100만원 (3순위 청약신청자에 한함)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①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 이상 세대주 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5년이상 세대주 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호적등본 1통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예정자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②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소정양식)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위임장은 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3순위 청약신청금

주택형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가능한 한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1.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2006. 09.11(월) 이후 (평일 10:00 ~ 16:00) 단,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환불장소 : 당사 견본주택
3.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영수)증, 신분증, 공급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의 환불시에 한함)
4.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및 위임장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5. 3순위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6. 3순위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선정 결정

주택형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무주택 우선공급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지역 일반 1순위자 등과 함께 전산추첨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공통 (일반공급)	- 신청자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각 순위별로 청약순위에 의해 공개 추첨하여 동·호수를 무작위로 결정함 - 각 주택형별 공히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 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선정 후 당사 견본주택 내 게시판에 별도 공고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계약일시 : 2006. 09. 13(수) ~ 2006. 09. 15(금) [3일간] 09:30~16:30
2.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3.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11-2블럭	광주은행	072 - 127 - 006561	중흥건설산업(주)	광주은행 신안동 지점
10-2블럭	국민은행	773937 - 01 - 003746	(자)중흥주택	국민은행 풍향동 지점
9-2블럭	광주은행	072 - 127 - 006552	(자)중흥주택	광주은행 신안동 지점

4.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5.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본인 계약체결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계약금 (가능한 한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무주택우선공급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무주택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조건 등
1.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중 40% 최우선 공급 당첨자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0년 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중 35% 우선 공급 당첨자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된 경우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및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자로 판명된 경우
2. 청약관련예금자의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5.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6.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8.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부대복리시설
· 11-2블럭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 9-2, 10-2블럭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근린생활시설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
-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하여는 입주 전 (사용검사일 기준 약 1~2개월이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입주예정일
· 11-2블럭 : 2009년 5월경
· 9-2, 10-2블럭 : 2008년 11월경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유의사항
· 광주광역시는 2003.11.18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무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5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35세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반공급 주택수의 35%를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함.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완택지지구내 학교부지 일부가 취소 및 위치·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완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 등)은 한국토지공사,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 기 청약자격이 전산 등록된 분 중 주민등록사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신청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 한 후 신청해야 함.
· 청약관련예금자의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은 취소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로 변경하여 당해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무주택 우선공급, 1순위 신청자 중 임대주택(임대기간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자 제외)가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본 주택의 당첨사실을 인정하여 입주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이상 청약 신청시 청약모두가 무효처리됨.
· 당첨·계약체결 후라도 서류결격,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첨권 박탈, 계약취소 등 주택법에 정한 제재를 받음.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분양자가 대지 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해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의 내부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와 인테리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종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에 부기등기가 되며, 부기등기 말소신청은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당해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수완지구 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지정에 의거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등에 표기한 내용을 준수하여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수완택지개발지구 부지 인근에 하남산단이 입지하고 있어 공단에서 환경오염물질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 수완지구 난방은 구역형 집단에너지공급방식에 의한 지역난방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친환경예비인증을 득한 주택임.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약관

구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11-2블럭	제 05612006 - 101 - 0004900	121,925,140,000원	보증서 발급일 ~ 준공+1개월
10-2블럭	제 05612006 - 101 - 0004800	30,243,100,000원	
9-2블럭	제 05612006 - 101 - 0004700	28,469,690,000원	

1. 보증채무의 내용 (제3조)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의 납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인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 : 샤시, 홈오토, 발코니확장,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3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11-2블럭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중흥건설산업 주식회사	중흥건설 주식회사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2-3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2-3
등록번호	광주 - 주택2002 - 0008	광주 - 주택1989 - 0004

· 9-2, 10-2블럭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합자회사 중흥주택	합자회사 중흥주택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2-3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2-3
등록번호	광주 - 주택2002 - 0007	광주 - 주택2002 - 0007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11-2블럭	건축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기람건축	1,694,309,598원	부가세 포함
	전기감리	(주)신성건축사 사무소	163,000,000원	
	통신감리	(주)한림엔지니어링	20,000,000원	
	소방감리	감한이엔씨(주)	110,000,000원	
10-2블럭	건축감리	(주)태원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462,683,260원	
	전기감리	(주)신성건축사 사무소	38,500,000원	
	통신감리	(주)한림엔지니어링	10,000,000원	
	소방감리	감한이엔씨(주)	10,000,000원	
9-2블럭	건축감리	(주)태원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408,876,550원	
	전기감리	(주)신성건축사 사무소	38,500,000원	
	통신감리	(주)한림엔지니어링	10,000,000원	
	소방감리	(주)신성건축사사무소	40,000,000원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93-55번지 (☎) 062-364-0001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05.12.2개정·시행)
- 아래 각 부위별 비용에는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구분	주택형별	부위	① 당초금액	② 확장금액	계약자 납부금액 ②-①	계약자 납부금액 계	비고
11-2블럭	116.1763	거실	1,140,000	3,010,000	1,870,000	6,620,000	
		안방	1,670,000	1,560,000	-110,000		
		침실1	680,000	990,000	310,000		
		침실2	670,000	950,000	280,000		
		주방&식당	920,000	2,380,000	1,460,000		
		전실	470,000	1,590,000	1,120,000		
		대피공간		1,690,000	1,690,000		
	119.2660	거실	1,260,000	3,010,000	1,750,000	7,150,000	
		안방	1,530,000	1,760,000	230,000		
		침실1	660,000	970,000	310,000		
		침실2	700,000	1,520,000	820,000		
		주방&식당	1,250,000	2,560,000	1,310,000		
		부부욕실	20,000	680,000	660,000		
		드레스실	370,000	1,970,000	1,600,000		
		전실		180,000	180,000		
		대피공간		290,000	290,000		
	120.7866	거실	1,260,000	3,010,000	1,750,000	7,150,000	
		안방	1,530,000	1,760,000	230,000		
		침실1	660,000	970,000	310,000		
		침실2	700,000	1,520,000	820,000		
		주방&식당	1,250,000	2,560,000	1,310,000		
		부부욕실	20,000	680,000	660,000		
		드레스실	370,000	1,970,000	1,600,000		
		전실		180,000	180,000		
		대피공간		290,000	290,000		
	122.4846	거실	1,240,000	3,290,000	2,050,000	7,440,000	
		안방	1,510,000	2,990,000	1,480,000		
		침실1	700,000	910,000	210,000		
		침실2	530,000	930,000	400,000		
		침실3	650,000	900,000	250,000		
		주방&식당	1,280,000	2,590,000	1,310,000		
		부부욕실	40,000	1,120,000	1,080,000		
		공용욕실		200,000	200,000		
		파우더룸		30,000	30,000		
		전실		250,000	250,000		
		대피공간		180,000	180,000		
10-2블럭	116.3105	거실	1,140,000	3,010,000	1,870,000	6,620,000	
		안방	1,670,000	1,560,000	-110,000		
		침실1	680,000	990,000	310,000		
		침실2	670,000	950,000	280,000		
		주방&식당	920,000	2,380,000	1,460,000		
		전실	470,000	1,590,000	1,120,000		
		대피공간		1,690,000	1,690,000		
	120.2690	거실	1,330,000	3,390,000	2,060,000	7,340,000	
		안방	1,440,000	2,880,000	1,440,000		
		침실1	570,000	890,000	320,000		
		침실2	530,000	950,000	420,000		
		침실3	650,000	950,000	300,000		
		주방&식당	1,280,000	2,600,000	1,320,000		
		부부욕실	40,000	1,080,000	1,040,000		
		파우더룸		30,000	30,000		
		전실		230,000	230,000		
		대피공간		180,000	180,000		
	122.6180	거실	1,240,000	3,290,000	2,050,000	7,440,000	
		안방	1,510,000	2,990,000	1,480,000		
		침실1	700,000	910,000	210,000		
		침실2	530,000	930,000	400,000		
		침실3	650,000	900,000	250,000		
		주방&식당	1,280,000	2,590,000	1,310,000		
		부부욕실	40,000	1,120,000	1,080,000		
		공용욕실		200,000	200,000		
		파우더룸		30,000	30,000		
		전실		250,000	250,000		
		대피공간		180,000	180,000		
9-2블럭	120.4881	거실	1,330,000	3,390,000	2,060,000	7,340,000	
		안방	1,440,000	2,880,000	1,440,000		
		침실1	570,000	890,000	320,000		
		침실2	530,000	950,000	420,000		
		침실3	650,000	950,000	300,000		
		주방&식당	1,280,000	2,600,000	1,320,000		
		부부욕실	40,000	1,080,000	1,040,000		
		파우더룸		30,000	30,000		
		전실		230,000	230,000		
		대피공간		180,000	18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가산비용의 항목별로 분양원가를 공시하여야 함.

원가항목			총금액	평당금액	비고
11-2블럭	전용면적 85㎡이하	택지비	31,601,817,670원	1,799,356원	
		공사비	103,441,934,413원	2,228,831원	
		설계비,감리비	3,735,559,598원	80,481원	
		부대비용	14,852,800,000원	320,000원	
		가산비용	33,950,888,319원	731,463원	
		합계	187,583,000,000원		
10-2블럭	전용면적 85㎡이하	택지비	7,702,769,580원	1,803,635원	
		공사비	24,821,299,909원	2,088,335원	
		설계비,감리비	1,241,477,260원	104,501원	
		부대비용	3,801,600,000원	320,000원	
		가산비용	8,962,553,254원	1,158,516원	
		합계	46,529,700,000원		
9-2블럭	전용면적 85㎡이하	택지비	6,728,064,800원	1,804,389원	
		공사비	21,512,845,607원	2,015,769원	
		설계비,감리비	1,133,398,550원	107,789원	
		부대비용	3,364,800,000원	320,000원	
		가산비용	7,983,991,043원	1,158,516원	
		합계	40,723,100,000원		

※ 상기 항목별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산정된 사전 추정가격으로서, 준공시 소요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단지 [11BL] 시행 : 중흥건설 산업 시공 : 중흥건설
2단지 [10BL]·3단지 [9BL] 시행·시공 : 중흥주택

수완신도시 대표 명품아파트
중흥 S-클래스
35평형 / 36평형 / 37평형 [방 4개]
문의 062) 364-0001

광주 수완지구 중흥S-클래스 35·36·37평형 총1,418세대 분양! 계약금5%·중도금 전액 무이자